

1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단일 세율 적용 - 발전량(kWh) 당 0.6원	<input type="checkbox"/>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연료별 차등세율 적용 - LNG 연료 : 0.6원/kWh - 일반(유연탄 등) : 0.7원/kWh

□ 개정 내용

-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
 - 액화천연가스(LNG)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현행 세율(0.6원/kWh)을 유지하되, 유연탄 등 이용 시 세율을 0.1원 인상(0.6→0.7원/kWh)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8조(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